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82
----------	-----

2019. 10. 25. (금)
교 육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: 충청북도교육감

나. 제출일자: 2019년 10월 8일

다. 회부일자: 2019년 10월 11일

라. 상정일자: 2019년 10월 17일

(제3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행정국장 양개석)

가. 제안이유

- 표창 수여 대상을 “교육관련 상징성이 있거나, 공로가 인정되는 동·식물 및 구조물 등”으로 확대하고,
- 표창의 종류 및 명칭을 단순화하여 표창의 품격 향상 및 대국민 신뢰도 제고
- 교육지원청별 규모에 맞는 교육장 소속 공적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으로 표창 업무의 효율성 제고

나. 주요내용

- 표창 수여 대상 확대(안 제2조)
 - 개인 또는 기관·단체 → 개인 또는 기관·단체, 동·식물 및 구조물 등
- 표창의 종류 및 명칭 단순화(안 제3조)
 - 공적상, 창안상, 우등상, 협조상 → 표창장, 상장, 감사장
- 교육장 소속 공적심의위원회 구성(안 제11조제3항)
 -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 ~ 9명으로 구성 → 5 ~ 13명으로 구성

3.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최경분)

- 본 조례 개정안은 표창 수여 대상을 ‘교육관련 상징성이 있거나 공로가 인정되는 동·식물 및 구조물 등’ 까지 확대하고, 표창의 종류와 명칭을 현실에 맞게 ‘표창장, 상장, 감사장’ 으로 하며, 교육지원청의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을 기존 ‘5 ~ 9명’ 에서 ‘5~13명’ 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됨
- 다만, ‘동·식물 및 구조물’ 에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“생 략”

5. 토 론 요 지: “생 략”

6. 심 사 결 과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:

- 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표창대상) 이 조례에 따른 표창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충청북도 교육·학예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("행사"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또는 기관·단체
2. 교육관련 상징성이 있거나 공로가 인정되는 동·식물 및 구조물 등

제3조 중 "공적상, 창안상, 우등상 및 협조상" 을 "표창장, 상장, 감사장" 으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"공적상" 을 "표창장" 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공적상" 을 "표창장"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 "헌신적인 봉사와 탁월한 직무수행으로 교육·학예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" 를 "헌신적인 봉사로 교육·학예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" 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창의적인 의견이나 방안을 제시하여 충북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
4. 그 밖에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5조를 삭제한다.

제6조의 제목 "우등상" 을 "상장" 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우등상" 을 "상장" 으로 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감사장) 감사장은 충북교육 시책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대내외적으로 충북교육의 신뢰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경우에 수여한다.

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표창장은 별지 제1호서식, 상장은 별지 제2호서식, 감사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.

제10조 단서 중 “우등상” 을 “상장” 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담당관 및 각 과장” 을 “각 담당관 및 과장” 으로, “인사담당사무관” 을 “인사팀장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9명” 을 “13명” 으로, “행정과 총무팀장” 을 “행정과(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은 총무과) 총무팀장” 으로 한다.

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8조(위임규정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받은 표창은 이 조례에 따른 표창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표창대상)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충청북도 교육·학예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("행사"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또는 기관·단체에게 수여한다.</p>	<p>제2조(표창대상) 이 조례에 따른 표창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충청북도 교육·학예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("행사"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또는 기관·단체 2. 교육관련 상징성이 있거나 공로가 인정되는 동·식물 및 구조물 등
<p>제3조(표창의 종류)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공적상, 창안상, 우등상 및 협조상으로 구분한다.</p>	<p>제3조(표창의 종류)----- -----표창장, 상장, 감사장----- -----.</p>
<p>제4조(공적상) 공적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헌신적인 봉사와 탁월한 직무수행으로 교육·학예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2. (생략) 3. <신설> 4. <신설> 	<p>제4조(표창장)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헌신적인 봉사로 교육·학예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2. (현행과 같음) 3. 창의적인 의견이나 방안을 제시하여 충북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4. 그 밖에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창안상) ① <u>창안상은 교육·학예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충청북도 교육발전에 기여한 경우에 수여한다.</u></p> <p>② <u>창안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따로 정한다.</u></p>	<p><삭제></p>
<p>제6조(우등상) <u>우등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.</u></p> <p>1. ~ 2. (생략)</p>	<p>제6조(상장)</p> <p><u>상장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협조상) <u>협조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.</u></p> <p>1. <u>교육행정의 개선과 발전에 공헌한 경우</u></p> <p>2. <u>학생 선도와 학생 복지 증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</u></p> <p>3. <u>대외적으로 충북교육의 명예와 지위를 선양하거나 이를 지원한 경우</u></p>	<p>제7조(감사장) <u>감사장은 충북교육시책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대내외적으로 충북교육의 신뢰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경우에 수여한다.</u></p> <p>1. <삭제></p> <p>2. <삭제></p> <p>3. <삭제></p>
<p>제8조(표창권자) (생략)</p>	<p>제8조(표창권자)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조(표창 방법 및 부상) ① <u>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 및 창안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표창장을, 우등상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장을, 협조상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감사장을 수여한다.</u></p>	<p>제9조(표창 방법 및 부상) ① ----- -----<u>표창장은 별지 제1호서식, 상장은 별지 제2호서식, 감사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<p>제10조(공적심의) 표창은 공적조서에 따라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 다만, 순위 또는 등급 등이 미리 정해진 <u>우등상</u>의 경우에는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</p>	<p>제 1 0 조 (공 적 심 의)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상 장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
<p>제11조(공적심의위원회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교육감 소속 위원회는 부교육감, 기획국장, 교육국장, 행정국장, <u>담당관 및 각 과장으로</u> 구성하되,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,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, 위원은 기획국장, 행정국장, 담당관 및 각 과장으로 하고,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총무과 인사담당사무관이 된다.</p> <p>③ 교육장 소속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<u>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</u> 구성하되, 위원장은 교육과장(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은 교육국장)이 되고, 부위원장은 행정과장(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은 행정국장)이 되며, 위원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고,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</p>	<p>제11조(공적심의위원회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각 담당관 및 과장으로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인사팀장</u>-----.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 <u>5</u> -----</p> <p>----- <u>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</u> -----</p> <p>----- <u>구 성 하 되</u> -----,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두되 <u>행정과 총무팀장</u>이 된다.</p> <p>④ ~ ⑥ (생략)</p>	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u>행정과(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은 총무과) 총무팀장</u>이 된다.</p> <p>④ ~ ⑥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2조 ~ 제17조 (생략)</p>	<p>제12조 ~ 제17조 (현행과 같음)</p>
<p><u>제18조(위임규정)</u>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<u>교육규칙</u>으로 정한다.</p>	<p><u>제 1 8 조 (위 임 규 정)</u></p> <p>----- <u>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</u> ----.</p>

관 계 법 령

□ 「지방공무원법」

제79조(표창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.

[전문개정 2008. 12. 31.]